

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- 다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 개정 (2011/5/18 개정, 5/30 시행)

1) 개정목적

- ☐ 분할재상장 요건의 강화, 신주 발행시 상장유예제도의 개선 및 자진 상장폐지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화 및 시장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

2) 개정내용

가) 분할재상장제도의 개선

- ☐ 신규상장에 비해 완화된 재상장 심사요건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을 강화함
 - 기존 상장규정상 분할재상장의 경우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심사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였음
 - 분할재상장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모두에 적용
 - 재상장 절차는 인적분할의 경우 신설법인은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되어 예비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요구되지 않지만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법인은 공모 후 상장되므로 예비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됨
 - 재상장 요건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모두 신규상장요건 보다 완화되어 이익 요건, 상장주식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인적분할의 경우 주식분산요건 또한 미적용됨
 - 분할 재상장에 따른 존속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 정지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실시
 -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실기업을 분할한 뒤 재상장을 하거나 부실사업을 존속회사에 존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할재상장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함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- 재상장 허용 대상을 축소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신규상장 심사대상으로 규정(2조 3항 2호)
 - 물적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규상장과 동일하여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신규상장과 동일한 절차 및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

- 인적분할에 의한 재상장절차를 강화하여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(9조 1항, 12조 2항~5항, 15조, 95조)
 -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 후 지체없이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 등 제출하여야 함
 -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음
 -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3사업연도의 분할계획서와 분할재무상태표,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이익현황과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
 - 합병후 3년 이내 분할 법인에 대한 제출서류를 강화
 -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 해당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법인의 주된 영업부문이 합병 당시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함
 - 지주회사의 재상장 신청서류를 신설
 - 자회사에 대한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, 그밖에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
 - 분할신설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확인서를 검토의견이 기재된 검토보고서로 변경하여 감사인의 확인절차를 강화
 - 재상장 예비심사시 상장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함
 - 거래소는 재상장 예비심사시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2개월 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상장·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
 -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도입
 -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 신고가 있는 경우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제출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

- 부실한 신설법인의 재상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분할 재상장요건을 신규상장 수준의 경영성과 요건 등을 적용하도록 강화함 (36조)



- 기업 규모등 요건으로 상장 예정 주식수 요건을 도입
 - 재상장예정주식총수(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는 제외)가 100만주 이상일 것
 - 이는 재상장 유통가능한 주식수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가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함
- 경영성과 요건으로 분할로 이전된 영업부문의 최근연도 매출액을 2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, 이익요건으로 이익액 25억원 이상일 것을 신설
 - 이때 이익액은 영업이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
 - 단, 종속회사가 있는 재상장신청인이 K-IFRS를 적용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되,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
- 합병 후 3년 내 분할하게 되는 법인의 재상장요건을 강화
 - 매출액은 최근 3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이고, 최근 사업연도에 300억원 이상이어야 함
 - 경영성과 요건으로 이전 예정인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이고,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익률(ROE) 5%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(ROE)이 10% 이상이어야 함

□ 분할재상장제도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인 5월 30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(부칙 1조)

나) 자진 상장폐지기준 개선

-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선(77조)
- 상장기업의 자진상장 폐지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 - 이에 따라 자진 상장폐지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, 거래소는 상장·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 신청 거부를 결정하도록 함
 - 상장폐지신청에 대한 거래소의 승인거부 사유로 상장·공시위원회를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
 - 개정된 자진 상장폐지기준은 규정 시행일인 5월 30일 이후 증권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2조)



다)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 정비

- ☐ 신주발행시의 상장유예 대상으로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신주발행 무효에 따른 상장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함(103조)
 - 기존의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소송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사유 해소 시까지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문제가 있었음
 -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송확정시까지 신주를 전량 보호에 수한 경우, 가처분 결정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
 - 신주발행 무효에 따른 상장유예의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상장·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함
 - 개정된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는 규정 시행일인 5월 30일 이후 현재 진행중인 주권상장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(부칙 3조)

나.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(2011/5/30 개정·시행)

1) 개정목적

- ☐ 분할재상장 요건의 강화,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의 개선 및 자진 상장폐지기준의 구체화 등 개정된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에 따라 세부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

2) 개정내용

- ☐ 분할재상장 심사절차의 개선에 따라 제출서류 및 적용 요건을 정비함(4조의3 6항, 8조 3항·5항, 50조 2항)
 - 인적분할 재상장시 예비심사가 도입되고 물적분할이 재상장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
 - 본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5월 30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(부칙 1조)
- ☐ 상장폐지신청에 따른 상장·공시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투자자보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(44조의2)
 - 해당 법인 또는 최대주주등이 해당 주권에 대하여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를 하였을 것



- 상장폐지 신청일 현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
-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(최대주주등은 제외)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기회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을 것
- 그 밖에 공개매수의 조건 등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
- 본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5월 30일 이후 증권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2조)

□ 주권 상장유예의 예외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함(51조의2)

- 신주발행시의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'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'를 다음과 같이 규정
 - 신주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·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신주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·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권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
 -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상장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시 별지 제27호의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
 - 신주발행의 효력 등에 대한 소송관련 서류
 - 변호사,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
 -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·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예 여부를 심의
 -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
- 거래소는 상장·공시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정 내용을 상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 - 이때 상장신청인인 위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본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5월 30일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주권상장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(부칙 3조)

□ 상장폐지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모든 기간 계산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(46조의4 3항, 47조 10항)



다.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 개정 (2011/5/18 개정, 5/30 시행)

1) 개정목적

- ☐ 분할재상장제도의 요건 및 절차 강화, 신주 발행시 상장유예제도의 개선 및 자진 상장폐지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개정내용

가) 분할재상장제도의 개선

- 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마찬가지로 신규상장에 비해 완화된 재상장 심사요건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을 강화함
 - 기존 상장규정상 분할재상장의 경우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심사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였음
 - 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기존에도 물적분할은 재상장 허용대상이 아니었으며 신규상장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고 있었음
 - 인적분할 재상장에 따른 신설법인은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되어 예비심사는 적용받지 아니하나 상장·공시위원회의 심의는 요구되었음
 - 인적분할에 따른 재상장 요건은 신규상장요건 보다 완화되어 이익 요건, 상장주식수 요건, 주식분산요건 미적용
 - 분할 재상장에 따른 존속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 정지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실시
 -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실기업을 분할한 뒤 재상장을 하거나 부실사업을 존속회사에 존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할재상장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함
- ☐ 인적분할 재상장의 예비심사 관련 규정을 마련(4조 1항·3항)
 - 재상장신청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지체없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 - 분할계획서 및 분할재무상태표 등



- 예정법인에 대한 최근연도의 구분 매출액 및 이익현황(연결포함)
- 당해 연도 신설법인의 반기매출액 및 이익현황 제출(단, 반기 경과시)
- 세칙에 위임된 기타 필요서류

□ 인적분할 재상장 요건을 강화하여 이익요건을 추가하고 유통주식수 요건을 신설함(17조 2항·4항)

— 신규상장과 동일한 수준의 이익요건을 추가함

-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,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(ROE)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 혹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

— 재상장 이후 유통가능한 주식수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가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주식수 요건을 신설

-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예정인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(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는 제외)가 100만주 이상일 것

□ 상장적격성 부적격 분할존속 예정법인 등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 근거 마련(38조 2항 5호 자목)

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상장법인 자기자본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자본잠식이 있거나 이익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및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- 이익 등 요건이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,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(ROE)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 혹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을 의미함

—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실질심사를 실시함

- 다만 합병당시 우회상장 질적심사 충족법인의 경우는 제외

□ 분할재상장제도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인 5월 30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공시규정(6조 1항 3호 가목 (8))에 따라 신고한 법인부터 적용(부칙 2조)



나) 자진상장폐지 절차 및 신주발행에 의한 상장유예제도 개선

☐ 자진상장폐지신청에 대한 상장위원회의 심의절차 근거를 마련(45조 3항)

☐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18조 6항~8항)

- 소제기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경우의 예외로써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
- 소제기로 신주상장 유예에 대신 이의신청을 통한 상장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도입

라.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」 개정 (2011/5/27 개정, 5/30 시행)

1) 개정목적

☐ 분할재상장 요건의 강화,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의 개선 및 자진 상장폐지기준의 구체화 등 개정된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함

2) 개정내용

☐ 신주발행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주 상장유예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를 마련(18조의2)

- 상장규정상 소제기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경우의 예외로써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'세칙으로 정하는 경우'를 다음과 같이 규정
 -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결정·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
 -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 원인 등에 비추어 변경(추가)상장을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
- 신주 상장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시 [상장서식 21-2]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 -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 관련서류



- 변호사,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
-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(추가) 상장 신청 유예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함
 - 이 때 거래소는 변경(추가)상장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
-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(추가)상장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
□ 지주회사 매출액 요건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(24조 1항)

- 지주회사의 경우 소속부 및 관리종목지정,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련 매출액요건 적용시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함

□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분할존속법인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규정(29조 1항 5호 차목)

-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분할존속법인이 매매거래정지기간 중 당해 분할·분할합병에 대한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당해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도록 함
- 본 규정(29조)은 이 규정 시행일인 5월 30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공시규정(6조 1항 3호 가목 (8))에 따라 신고한 법인부터 적용(부칙 2조)

□ 분·반기 매출액 적용예외 정비하여 매출액 유예 적용대상에 신성장동력기업 추가함(33조 11항 4호 라목)

- 실질심사 대상인 주된영업정지관련 분·반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 유예대상인 신성장동력기업은 제외함
 -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상장후 3년간 매출액 관리요건(30억) 적용을 유예

□ 자진상장폐지신청에 대한 세부심의절차 마련 (34조 3항·4항)

- 거래소는 상장폐지신청시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내용을 심의하여야 함
 -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여부
 - 상장폐지신청인이 상장폐지신청 이전 당해 주권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매수를 약속하는 등 주주보호절차의 충실한 이행여부



-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
-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
연구원 김수연 (02-3771-0673, portia725@kcmi.re.kr)